**주식회사 신원 윤리규범**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윤리규범은 주식회사 신원의 임직원이 윤리강령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천하며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상황 속에서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윤리적 의사 결정 및 행동원칙]**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한 윤리적 갈등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 윤리강령과 본 윤리규범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

단, 윤리규범에 판단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자신의 판단에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참빛소리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법무감사팀)의 자문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제 3조 [적용 대상]**

본 윤리규범은 주식회사 신원에 재직중인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주식회사 신원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해외법인의 경우 현지 법규를 함께 고려하여 본 윤리규범을 시행한다.

**2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

**제 4조 [성실한 업무 수행 및 규정 준수]**

1. 임직원은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고 회사의 경영이념을 좇아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충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2.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법규와 사규를 정확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한다.

3. 임직원은 회사의 건전한 기업문화에 적극 동참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제 5조 [이해상충의 해결]**

1.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회사와의 이해상충으로 회사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임직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예시적 사항)를 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한다.

1) 거래 업체에 대한 사적 지분 참여

2) 회사 자산의 불법․부당 사용

3) 업무상 지위 남용

4) 내부자 거래 및 불공정 거래

5) 성실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타업 종사

**제 6조 [회사자산의 보호와 적절한 사용]**

1. 회사의 자산은 목적에 맞도록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이용하거나 회사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임대, 양도해서는 안된다.

2. 회사의 예산은 회사가 정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정확하게 회계처리해야 하며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거나 경비를 변칙 처리해서는 안된다.

3.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타인 또는 타사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여 무단사용, 복제, 배포 등 일체의 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회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컴퓨터는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해는 안되며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사용해야 한다.

4. 회사의 정보자산은 사규에 따라 엄격하고 철저히 관리하고 정보자산의 공개여부 및 범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사규, 회사방침을 준수한다.

**제 7조 [선물, 접대 및 금전거래]**

1. 임직원은 부당하고 불공정한 이익의 향유를 목적으로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2. 임직원은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건전한 관계 유지를 위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금품, 향응 또는 기타 개인적인 편의 등을 여하한 명목으로도 받아서는 안된다.

3. 임직원 상호간에는 과도한 금전거래나 대출 보증 등의 일체의 보증 및 담보제공 등을 금하며, 다단계 판매 등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 8조 [상호 존중]**

1. 임직원은 직급과 직책에 상관없이 서로 존중하며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키고 즐거운 직장 생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2. 성별, 지연, 학연, 종교 등에 따라 파벌을 형성하거나 타 임직원에게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된다.

3.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근무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는 일체의 성희롱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 9조 [신고 제도]**

1. 임직원은 본인 또는 타인이 윤리규범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것을 강요 받는 경우 이를 참빛소리나 윤리경영 담당부서(법무감사팀)에 보고 또는 제보하여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행위로부터 회사와 임직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2. 임직원은 윤리규범을 알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면책되지 않음을 인식하고 윤리규범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위반의 우려가 있을 경우 참빛소리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법무감사팀)에 문의하여야 한다.

3. 임직원은 정당한 제보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하며, 회사는 다양하고 효율적인 방법의 신고제도 및 신고자 보호제도를 마련, 운영해야 한다.

**제3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 10조 [고객에 대한 자세]**

1.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고객의 요구를 모든 의사결정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2. 고객이 회사의 발전과 성장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고객을 위한 가치 창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3. 고객에게는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불량 상품의 판매 또는 부실한 서비스의 제공 등으로 고객이 불만을 갖는 일이 없도록 한다.

4. 고객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신뢰에 반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제 11조 [성실한 정보제공]**

1. 회사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아닌 한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의 공개 및 광고로 진실만을 전달하며,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과장광고를 하지 않는다.

2. 고객의 안전을 위해 제품 사용상 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충분히 이를 설명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 12조 [고객 보호]**

1. 소비자 보호에 관한 제반 법령을 존중하고 이를 준수한다.

2. 고객의 불편사항이나 고객과의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고객에 대한 과도한 비용부담 전가 등 부당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3. 고객에 대한 정보는 그 비밀을 보호하고,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는 누구에게든지 제공해서는 안되며 타 용도에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

4. 기타 고객의 인격과 이익을 침해하는 일체의 언행을 하지 않는다.

**제4장 주주에 대한 책임**

**제 13조 [주주 존중]**

1.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 기준을 준수하여 각종 기업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정확하고 투명하게 제공하여 투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

2. 모든 주주들에게 평등한 대우를 보장하며 정당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이를 경영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3. 대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액주주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 14조 [주주 이익의 보호]**

1. 끊임없는 혁신을 통한 효율적 경영으로 건전한 이익을 달성함으로써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며 그 성과를 주주와 함께 공유한다.

2. 경영자료는 제반 법규와 기준에 맞게 작성하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법규에 따라 성실하게 공시한다.

3. 회사는 적극적 홍보 및 IR 활동을 통하여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제5장 공정한 거래**

**제 15조 [협력업체 등에 대한 의무]**

1. 자격을 구비한 모든 협력업체에 대하여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공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투명한 절차를 거쳐 거래선을 선정한다.

2. 협력업체, 대리점 등 거래 상대방과의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실시하며 거래조건 등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3. 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정보는 업무 목적 외에 이용해서는 안되며 임의로 제 3자에게 유출하지 아니한다.

**제 16조 [관련 법규 준수 및 부정행위 금지]**

1.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해당 법규를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또는 법무 담당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처리해야 하며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된다.

3. 동종업체와 판매가격, 판매조건 등에 관한 담합을 하지 아니하며 담합을 목적으로 한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는다.

4. 경쟁사의 정보에 대해서는 상호합의 없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삼가고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 입수하여 정당하게 활용한다.

**제 17조 [상호 발전의 추구]**

1. 기술지원 및 경영지도 등의 합법적 지원을 통해 협력업체가 경쟁력을 강화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혁신을 통해 창출되는 수익을 상호 공유한다.

2.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제6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제 18조 [임직원 존중]**

1. 임직원 개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독립된 인격체로서 대하며 각자의 기본권을 존중한다.

2.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3. 임직원의 건전한 제안, 건의 및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분위기를 조성한다.

**제 19조 [공정한 대우]**

1. 임직원에게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학벌, 성별, 지역 등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부여한다.

2.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대하여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 20조 [인재 육성]**

1. 바람직한 인재상과 인재개발 방침을 확립하고 임직원의 독창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이 촉진될 수 있는 제도 및 근무환경을 갖추도록 한다.

2. 임직원의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권장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향상을 위한 제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3. 임직원의 희망, 적성, 능력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이를 인사 관련 사항(보직결정, 직무이동, 진급, 교육 등)에 적극 반영하고 직무를 통해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한다.

**제7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제 21조 [건전한 기업 활동]**

1. 회사는 국가와 사회의 가치관을 존중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건전한 기업활동을 통하여 회사를 발전시킴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

2. 국가와 자치단체 등의 지역사회가 부여하는 조세 및 각종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3. 사회 각계 각층과 지역 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해결하는데 노력한다.

**제 22조 [국가와 사회 발전에 공헌]**

1. 회사는 임직원의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회사의 이익을 사회복지, 선교사업을 통하여 사회에 환원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2. 인종, 학벌, 출신지역 등에 대한 차별없이 평등한 고용의 기회를 부여하며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제 23조 [환경 친화적 경영]**

1. 환경 보호와 관련된 국제기준, 관계 법령, 내부 규정 등을 준수한다.

2. 제품의 개발, 생산, 유통, 판매 및 폐기의 모든 사업활동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3. 공해 및 오염방지를 위한 폐기물 관리, 에너지 절감, 상품 품질 개선을 통해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환경 개선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부 칙**

1. 본 윤리규범은 2007년 월 일 제정하여 시행한다.

2. 본 윤리규범은 2015년 12월 1일부로 개정하여 시행한다.

3. 본 윤리규범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윤리위원회에서는 사규상의 상벌규정 절차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 대한 포상과 징계를 실시한다.

4. 윤리위원회는 대표이사, 감사, 사외이사(1인)로 구성한다.